

## 제·개정 및 폐지 예고문

가입탈퇴규정(회규)을 제·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11. 21.

대한체육회장

## 가입탈퇴규정(회규) 일부개정 사전예고

### 1. 개정 이유

- 국제종합대회 채택 종목의 가입 요건 완화 조항에 따른 한시적 가입 형태로 인한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 필요
  - 국제종합대회 종료 후 가입 요건 상실에 따라 인정단체 강등이 아닌 제명 조치
  - 아시안게임 종목의 준회원 가입 요건은 있으나, 정회원 승격 관련 조항은 부재
- 회원종목단체 의견수렴에 따른 가입 및 등급 심의 요건 현실화
- 등급 심의 시 가입요건 불충족 단체 대상 경고 조치 근거 마련
- 규정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자구 수정, 용어 정비, 별첨 양식 정비 등

### 2. 주요내용

- 국제종합대회 채택 종목의 가입·승격 요건 정비 \*2025년부터 적용
  - 차기 올림픽, 아시안게임 종목 미채택 시에도 회원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최소한 인정단체 수준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'국제종합대회 준회원 가입 및 정회원 승격 요건'을 전반적으로 정비
  - 올림픽, 아시안게임 종목에 대한 준회원 가입 요건 완화 기준을 인정단체 수준으로 통일하고, 아시안게임 종목의 정회원 승격 요건 완화 조항을 신설
- 가입 및 등급 심의 요건 중 시도종목단체 대회 1회 이상 주최 조건 개정
  - 시도종목단체 주최 대회뿐만 아니라 회원종목단체(중앙경기단체) 주최에 따른 시도종목단체의 주관 대회도 포함토록 조건을 완화하여, 현실적으로 대회 주최가 어려운 여건을 반영
- 등급 심의 관련 경고 조치 근거 마련 및 각종 자구 수정

- 등급 심의 시 등급 요건 미충족의 수준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, 강등·제명을 대신하여 적극적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'경고' 조치의 근거를 신설
- 경고 누적(3회) 시 필수 강등 조항을 신설하여 종목단체의 책임·의무 강화
- 스포츠비리 행위 등에 따른 긴급 강등·제명 심의를 위한 예외조항 신설

- 기타 조항 순서 및 자구 수정, 용어 정비, 별첨 양식 정비 등

### 3. 의견제출

- 이 가입탈퇴규정(회규)의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/이유
- 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#### 나. 의견 제출할 곳

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: law@sports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: 이메일

붙임 1. 가입탈퇴규정 일부개정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